

## 무료방문 컨설팅 자문위원 관리 지침

### 제1조(목적)

- ① 이 지침은 화성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무료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하게 자문위원을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무료방문 컨설팅”이란 화성상의에서 각 분야별 해당 자문위원을 업체로 방문케 하여 무료로 관련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 ② “업체”란 본 회의소 회원업체 및 “무료방문 컨설팅”을 받길 희망하는 기업 일체를 말한다.
- ③ “자문위원”이란 어떤 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인 일 처리 방법 등의 의견을 물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사업수행자”란 “무료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화성상의 직원)를 말한다. 실무자가 부재중일 경우 관련부서 팀원, 팀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의 “과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자문위원이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제한 없이 지식 및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상담 및 지도를 해주는 일체의 행위
  2. 상담 완료 후 사업수행자에게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 제3조(자문위원 선정)

- ① 자문위원 선정 시 대외적인 신임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그 ‘자격’이 명확히 검증된 자를 우선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조의식이 높은 자문위원을 물색하도록 한다.
- ② 1항의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공인자격(등록증, 자격증 등)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2. 전문대 이상의 지원 분야 과목 겸임교수 (시간강사 제외)이상으로 당해 연도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 3년 간 해당분야 관련 컨설팅(교육제외) 실적 5건 이상 보유자
  3. 학사·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최근 3년 간 해당분야 컨설팅(교육제외) 실적 5건 이상 보유자
  4. 해당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
- ③ 자문위원의 선정권한은 오직 “무료방문 컨설팅” 사업수행자(실무자 및 책임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 후 선정한다.
- ④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장명의로 (위촉기간이 명시된)위촉장을 발급받는다.

제4조(자문위원 임기 및 재위촉)

- ① 자문위원의 기본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만 2년으로 정한다.
- ②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평가표’ 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촉될 수 있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자 평가 (60점)	업무 대응 성실성 및 신속성 · 무료방문 컨설팅 접수 시 연락 접근성 및 과업 행정처리 신속성		20
	업무 내용 충실성 · 결과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20
	업무 전문성 · 과업 수행 가능 범위의 넓이 및 업체 구두 만족도		20
만족도 (40점)	자문 만족도	<b>전체 응답건수 대비</b>	<b>배 점</b>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0건	10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1건~3건	5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3건 초과	0점
	해결 만족도	<b>전체 응답건수 대비</b>	<b>배 점</b>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0건	10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1건~3건	5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3건 초과	0점
활용 만족도	<b>전체 응답건수 대비</b>	<b>배 점</b>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0건	10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1건~3건	5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3건 초과	0점	
성실도	<b>전체 응답건수 대비</b>	<b>배 점</b>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0건	10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1건~3건	5점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건수 3건 초과	0점	
총점			100

<자문위원 평가표>

- ③ 실적이 없어 만족도(40점) 평가가 어려운 경우, 사업수행자 평가(60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④ 만족도(40점) 평가는 최근 2년 기준의 만족도 결과로 평가된다.
- ⑤ 70점 미만인 경우, 자문위원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자문위원 해촉)

-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자문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1. 사업수행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문위원이 업체 방문 예정일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2. 해당 자문위원이 아닌 다른 자가 방문하여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3. 해당 자문위원이 상담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4. 완료 시 해당 자문위원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사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에게 제 때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잦은 연락 두절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해당 자문위원이 상담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요구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7.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체 정보 기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8. 위촉 기간 중 자문위원의 귀책으로 인해 화성상의 또는 업체에게 기타 유·무형의 손해가 있을 경우
  9. 위촉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를 못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와 비슷한 것으로서 자문위원 해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문위원에 해촉이 된 경우, 자문위원으로 재위촉이 될 수 없다.

#### 제6조(자문위원 컨설팅 배정)

- ① 무료방문 컨설팅 접수 시, 사업수행자는 상황에 맞게 임의 조정하여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배정한다.
- ② 기 배정 받은 자문위원의 귀책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업수행자는 다른 자문위원을 변경 배정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 준수사항)

- ① 자문위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자문위원은 과업 수행 중 얻게 된 업체 일체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기밀을 외부에 유출 또는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위원은 요구된 과업 이외에 대가가 필요한 제안 또는 그외 일체의 모든 영업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기타사항)

- 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요청사항은 별도로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지정한 세부사항은 본 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